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6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7. 12. 4

제출자 : 달 성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정이유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『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』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

나.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-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
-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
-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다.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(안 제5조)

라.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 (안 제6조)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-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

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
-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참고사항

- 제정조례(안) : 붙임
- 관 계 법 령 :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
- 규 제 심 사 : 해당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없 음
- 입법예고(2007. 11. 15 ~ 12. 5) 결과, 제출된 의견 - 해당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군민의 책무)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달성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)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
2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
3.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
4.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지원)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 사업)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3.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
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
6.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보조금 신청 등)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,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8조(중복지원 금지)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